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(2010.2.8)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에 맞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수수료 납부방법 신설(안 제4조의1)

- 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(2010.2.8)에 따른 납부 방법 다양화

### 나.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(안 제6조)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의하여 결정·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
## 3. 개정근거

- 1) 2010년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 
- 서울시 세무과 - 8808(2010.4.22)

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6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0. 7. 8. ~ 7. 28. (제출의견 있음)

가) 환경과 : 환경과-13197(2010.7.9)

○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항목 추가

- 가목 종목란 "(30)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" 및

나목 종목란 "(36)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" 신설

나) 감사담당관 : 감사담당관-5582(2010.7.28)

○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개선 권고사항(제7조 징수시기)

- 제7조 2항의 수수료 미 반환규정을 제증명 발급 전,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할 것을 권고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0. 8. 26)

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(공부등 열람의 제한)를 삭제한다.

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조의1(납부방법)**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6조(수수료의 감면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

## 신청하는 증명

7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  8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결정·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
  9.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  10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·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
-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(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)에 한하며,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징수시기)**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.
-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·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. 단,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.

제3조의 별표 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” 중 “2. 각종인·허가 및 신고사항(64종)”을 “2. 각종인·허가 및 신고사항(66종)”으로 하고, 동호 가목 종목란 “(30)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”, 단위란 “1건” 및 수수료액란 “10,000원”을 신설하고, 동호 나목 종목란 “(36)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”, 단위란 “1건” 및 수수료액란 “5,000원”을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<b>제2조(적용)</b>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<u>의하여</u> 징수한다.</p>	<p><b>제2조(적용)</b>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따라</u> .....</p>
<p><b>제4조(공부등 열람의 제한)</b> <u>별표에 열거한 공부, 도면,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.</u></p>	<p><b>제4조(공부등 열람의 제한) &lt;삭 제&gt;</b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조의1(납부방법)</b>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p>
<p><b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</b></p> <p>1. <u>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</u>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</p>	<p><b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<u>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</u>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.(위임받은자의 신청을 포함한다) 이 경우 본인의 증명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	
<p>3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·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</p>	<p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7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8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결정·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</p>
<p>〈신 설〉</p>	<p>9.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제7조(징수시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10.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</p> <p>② 제1항제2호에서 제9호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(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)에 한하며,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.</p> <p>제7조(징수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·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. 단,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.</p>

별표

현행			개정안		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			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종 목	단위	수수료액
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(1) ~ (29) (생략) <신 설>			가.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(1) ~ (29) (현행과 같음) (30) <u>소음·진동배출시설     설치허가 신청</u>	1건	10,000원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35) (생략) <신 설>		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35) (현행과 같음) (36) <u>소음·진동배출시설     설치신고</u>	1건	5,000원